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 제출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42)

2. 제출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마포복지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출연 필요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재산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통재산 출연 지원

-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모금·배분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라. 출연금액 및 내용

- 출연금액: 1,843,183천원
 - 출연내용: 재단 보통재산 지원
 - 인건비 973,563천원, 운영비 및 사업비 194,620천원, 특화사업(효콘서트) 40,000천원, 효도밥상 운영비 635,000천원
- ※ 기본재산 ‘24년 출연완료(총 50억)

【 출연금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용
합 계	1,843,183	
복지재단 보통재산	1,843,183	
마포 복지 재단 운영 지원	인건비	973,563
	운영비 및 사업비	194,620
	특화사업	40,000
	효도밥상 사업비	635,000
		반찬공장 인건비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결정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5.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출연금	비고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2025년	2,175,748	-	2,175,748	
2024년	4,196,416	1,500,000	2,696,416	
2023년	1,525,564	1,000,000	525,564	
2022년	999,181	500,000	499,181	
2021년	2,106,235	2,000,000	106,235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따라 예산의 출연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

- 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은

-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3억 3,256만 5천원이 감소한 18억 4,3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본재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억원을 출연 완료하여 기본재산 출연금은 없음.
- 보통재산은 마포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9억 7,356만 3천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9,462만원, 특화 사업(효콘서트 추진) 4,000만원, 효도밥상 사업비 6억 3,500만원을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임.

- 출연금 주요 감소 사유로는 '운영비 및 사업비' '중 재단 나눔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사업운영, 수탁시설 운영관리 등의 비용이 자부담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4,6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효도밥상 사업비' '의 반찬공장 인건비가 전년대비 857만 1천원 감액되었고, 반찬공장, 급식기관 운영 등이 자부담으로 운영됨에 따라 4억 6,420만원이 감액되었음.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1억 2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콘서트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함.
- 2021년 설립 이후 마포복지재단은 마포구의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발전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회의,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실뿌리복지센터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마포구의 복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복지재단이 계속하여 기관을 추가 수탁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 확보와 현장중심의 운영에 중점을 두어 구민에게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의 시, 복지재단의 신규사업 추진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최은영 (8810)	오경화 (8831)

참고자료

1.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마포복지재단 운영현황

1. ◦ 사업(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20. 2. 21.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1. 9. 8. 마포복지재단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개최
 - '21. 9. 마포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서울시 복지정책과)
- 설립형태 : 마포구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허가 : **2021. 11. 2.**(대표자: 김은영)
-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 기본재산 출연완료

- 총50억원(21년도 20억원, 22년도 5억원, 23년도 10억원, 23년도 15억원)

◦ 조직인력 : 이사회(이사17명), 감사(2명), 사무국(4개팀 12명)

◦ 주요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주민참여 확대 및 복지공동체 의식 함양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3. 효 콘서트 개최

효 콘서트 개최 (2025)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모집 및 지방보조금 교부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동일)
- 공모기간: 매년 2월~3월 중
- 대상: 관내 복지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절차: 공모 접수 → 선정심사 → 수행기관 선정 → 지방보조금 교부
- 사업진행: 매년 5월 중
- 장소: 마포아트센터(마포구 대흥로20길 28)
- 참석인원: 관내 어르신 1,000여명
- 사업내용
 - 대중가수 초청 축하공연을 통한 어르신들의 노고 격려
 -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025년 추진실적
 - 행사명: 2025년 어버이날 맞이 “행복하세요” 효콘서트
 - 일시: 2025. 5. 23.(금) 14:00~16:30
 -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주최/주관: 마포구/마포복지재단
 - 소요예산:
50,000천원[구비(보조금)40,000천원마포복지재단(자부담)10,000천원]

효 콘서트 개최 (2024)

- 2024년 추진실적
 - 1) 마음담은 마포 효실천 콘서트
 - 행사명: 마음담은 마포 효실천 콘서트
 - 일시: 2025. 5. 1.(수) 14:00~16:00

- 장 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주최/주관: 마포구/노인의료나눔재단

2) 마음담은 마포 효 콘서트

- 행사명: 마음담은 마포 효 콘서트
- 일 시: 2024. 11. 19.(화) 18:00~21:00
- 장 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주최/주관: 마포구/마포복지재단
- 후원: 회오리 연예인 축구단

○ 연도별 추진실적(2024~2025)

구분	행사일	장소	행사명	주최/주관	소요예산
2024년	2024.5.1.(수) 14:00~16: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마음담은 마포효실천콘서트	마포구/ 노인의료나눔 재단	20,000천원
	2024.11.19.(화) 18:00~21:00		마음담은 마포효콘서트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36,000천원 (구비3,000천원, 마포복지재단33,000천 원)
2025년	2025.5.23.(금) 14:00~16:30		어버이날맞이 “행복하세요” 효 콘서트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50,000천원 (구비40,000천원, 마포복지재단10,000천 원)